**퇴직금품 지연지급 합의서**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주식회사 마이다스인(이하 “회사”라고 한다)과 000(이하 “근로자”라고 한다)은/는 퇴직금 등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.** | | | | |
| 1. 근로자의 퇴직일은 **2023년 1월 27일**이며 이에 따른 금품청산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**2023년 2월 8일**이나,  회사의 자금집행 일정 등 사내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그 청산이 지연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.  2.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회사는 **2023년 2월 10일** 금품청산을 완료하며 근로자가 지정한예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.  3. 본 합의 이후 근로자는 퇴직금 지연이자 청구소송 등의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. | | | | |
| 본 합의에 대해 어떠한 착오나 기망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와 근로자는 본 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 원본 1부씩을 보관하기로 한다.  년 월 일 | | | | |
| [회사] | | |  | |
| 회 사 : | |  | | (주)에이치닷 | |
| 사 업 자 등 록 번 호 : | |  | |  | |
| 주 소 : | |  | |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7 에이치닷동 | |
| 대 표 이 사 : | |  | | (인) | |
|  | |  | |  | |
| [근로자] | |  | |  | |
| 주 소 : | |  | |  | |
| 생 년 월 일 : | |  | |  | |
| 성 명 : | |  | | (인) | |
|  |  | |  | |